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 수용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을 수용하고,
지정기간 종료 4건 등을 의결 -

금융위원회는 11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4건)	라이나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23.9.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경영 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그리고,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23.6.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정기간을 종료한 것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02-2100-2859)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최승희 (02-2100-2621)
<공동>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45)
		담당자	사무관	윤세열 (02-2100-2654)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조강훈 (02-3145-7140) 최범전 (02-3145-7135)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문형진 (02-3145-7460)
		담당자	팀 장	김성환 (02-3145-7474)



1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수용 (1건)

□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

[서비스 개요] ('21.2.18. 지정, '22.2.18. 연장)

-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포인트)으로 물품 구매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차이(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동 서비스가 여전법상 무허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규제개선 요청 수용]

- 네이버파이낸셜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관련 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23.9.14일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4.9.15일 시행 예정)되어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경영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으나, 향후 세부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규율할 예정임에 따라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예: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24.9.15일)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네이버파이낸셜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유사하게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 서비스를 영위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 동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지정기간 만료 전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되면 법령 정비 기간 동안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동일하게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4건)

□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기존 지정내용] ('22.12.21. 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전화모집(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 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 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 화면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0항, 제4-37조제2호 및 제3호,
제4-36조의2제4호
 -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 녹음해야 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되나,
 - ①, ②, ③의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규제개선 경과]

- 금융위원회는 그간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 및 이미지를 결합 (보면서 듣는 형태)하여 전화모집시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22.11월 발표)

- '23.6.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보험사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이용한 전자청약 등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법령 하에서도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정기간 종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가 불필요해지면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하였습니다.